

제2장 이용 및 계약

제4조(입소정원) ① 청명시니어하우스의 이용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생활가정 : 9명

제5조(이용대상) 청명시니어하우스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동생활가정 :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제6조(이용신청) ① 청명시니어하우스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강진단서는 입소시설을 이용할 때 제출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2.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 검진 포함)
- ③ 시설의 장은 이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이용대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모집방법) 청명시니어하우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모집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 홍보 팜플렛

제8조(입소시 구비서류) 이용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류, 건강진단서 등 기타 입소에 필요한 서류

제9조(계약목적) 청명시니어하우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제10조(급여계약 등) ① 시설의 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급여개시일 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의 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개정 2018.04.23.>

-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 2. 장기요양 급여비용
- 3. 비급여비용 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의 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퇴소신청을 유선이나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설의 장에게 하여야한다.

② 시설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2.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제12조(퇴소) ① 시설의 장은 입소시설 이용자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23.>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청명시니어하우스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장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가 제10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청명시니어하우스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청명시니어하우스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4.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5. 이용자의 주소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6.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7.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제3장 이용료

제14조(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시설의 장이 정한다.

【등급별 일일 이용료 산정표】

(2025. 1. 1. 기준)

요양 등급	기준일	급여항목		
		급여총액 (원)	공단부담금(80%/원)	본인부담금(20%/원)
1 등급	30일	2,174,400	1,739,520	434,880
2 등급	30일	2,017,500	1,614,000	403,500
3, 4, 5 등급	30일	1,860,000	1,488,000	372,000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청명시니어하우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비급여의 종류	1일 금액	월 금액 30일 금액	비고
식 대	3,000*3식=9,000	270,000	
간 식	1일 1,000	30,000	
이.미용료	별도 또는 무료	별도 또는 무료	자원봉사 이용 시 무료
약값 ,병원비	별도	별도	
상급침실비용(1인실)	1,000	30,000	1층 안방, 2층 민들레방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청명시니어하우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5조(이용료 납부 등)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청명시니어하우스는 제14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청명시니어하우스의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제16조(이용료 등 비용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청명시니어하우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1개월 전까지 유선 또는 서면으로 계약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급이 변경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또는 시행일을 기준으

로 변경된 비용을 기준으로 수납한다.

③ 시설(제공자)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제공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단, 시설정원이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제4장 서비스 관리

제17조(서비스 내용 및 비용의 부담) ① 시설의 장은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청명시니어하우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7. 지역자원 연계

8. 목욕서비스

④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8조(특별보호) ① 청명시니어하우스는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또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 ③ 시설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등을 자세히 기록·관리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하게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실시하되, 제한사유 등을 기록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상급침실 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부담한다.
- 제19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①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설의 장은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시설의 장은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③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시설의 장은 청명시니어하우스의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 ④ 시설의 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설의 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촉탁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촉탁의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